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56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임호선 · 이연희 · 이강일
이광희 · 장종태 · 윤준병
임미애 · 강준현 · 문진석
송재봉 · 이춘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또한, 관할 구역 밖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비용 부담,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

하도록 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 반출 실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3제1항·제3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3제1항 전단 중 “반입하여”를 “반입(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한 것을 포함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역”을 “지역(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 사유 및 처리 현황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② (생 략) <u><신 설></u>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u>
<u><신 설></u>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
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
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
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
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반입(민간폐기물처리
시설에서 반입한 것을 포함한
다)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 지역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2. ~ 4. (생 략)

<신 설>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을 포함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공개 등) ①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
리계획(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 사유 및
처리 현황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